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가단262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B

특별대리인 C

2. D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E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1. 6.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2022. 11. 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E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2. 11. 8. 접수 F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2022. 10. 2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이후인 2022. 7. 14. '원고가 2022. 7. 8.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내용의 B 상표권 사용 양도·양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2. 11. 8. D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2. 11. 8. 접수 F로 이전등록을 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하고 그 원인행위를 '이 사건 이전행위'라 한다).
라. 피고 회사 대표자 G은 2024. 1. 17. 사망하였고,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상표권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다.

마. D은 2024. 8. 1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4하단103465), 파산관재인 E이 D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D과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D'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전행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이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237,266,999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D이 피고 회사 대표자이던 G의 조카인 점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이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전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 회사가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변경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이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대표자 G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종찬

별지